

사장님~ 청년 채용하셨어요? 잊지 말고 지원금 신청 하세요!

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지원대상

2022년 1월 1일 이후 **취업으로**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

※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

📍 **취업으로** 청년은?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, 대학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, 고졸 청년 등

지원대상기업과
취업으로 청년
요건은 운영기관에
꼭 미리 확인하세요!

지원수준

1인당 매월 최대 80만 원, 최장 1년간 960만 원 한도,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(특별한 경우 60명까지 가능)

지원요건

- ☑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☑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
신청방법

- 1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 ▶ 회사근처 운영기관 검색 ▶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신청
- 2 참여승인 받은 후 청년 채용 ▶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까지 지원
-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

다른 지원금은 없나요?



‘청년채용특별장려금’도 있어요!

지원대상

2021년 10월 2일 ~ 2021년 12월 31일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
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(‘22년 7월 신청가능 기준) ※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

지원수준

1인당 매월 최대 75만 원, 최장 1년간 900만 원 한도, 기업당 최대 3명 지원

지원요건

- ☑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- ☑ 청년을 채용한 이후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(전년 연평균 대비)
- ☑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
신청시기

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

📍 **알아두세요!** 지원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안돼요.

청년 채용 시점	참여 가능 시점(1회차 지원기준)
'21.10.2 ~ '21.11.1.	'22.5.1 ~ '22.7.31.
'21.11.2 ~ '21.12.1.	'22.6.1 ~ '22.8.31.
'21.12.2 ~ '21.12.31.	'22.7.1 ~ '22.9.30.

지원금 신청기간
놓치지 말고 꼭!
확인해 보세요~

신청 및 문의

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또는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

‘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’를 아시나요?

기업별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청년의 지원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.
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활용해보세요.

대상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참여 사업장

내 용 지원대상 청년별로 과거의 지원이력(연월, 금액 등)

조회방법 1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 접속

2 기업로그인 ▶ 기업서비스 ▶ 조회 ▶ 지원금 지급내역(개인별) 조회

※ 참고 :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최대 3년 이내에는 지원금 신청 가능

신 청 누락된 지원금이 있으면 즉시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
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

문 의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